

육아정책 소식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저감’을 목표로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하고,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2015. 6월)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 확립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부적합 제품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물리적 요인 등에 의한 안전사고와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3차 계획을 통해 그 대책을 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사고 저감을 위해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유통 관리체계를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물질 안전기준뿐만 아니라 물리적 안전기준 대폭 재정비 어린이·성인 공용 제품 안전기준을 어린이제품 수준으로 높임. 안전한 제품 유통 활성화 위해 민·관 온라인 협의체 확대하기 위해 상품을 식별·추적하는 상품분류체계 도입
적발 위주의 사후관리에서 법적 처벌·의무 강화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 벌칙,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온라인 사업자 대상으로 결함보상(리콜) 제품 유통금지 및 인증정보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을 집중 단속 신규 유통경로 및 재래시장 등 관리 취약 상권의 관리 강화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소비자를 위한 안전문화를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 제품출시 전 위해도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보급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을 지속 확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체험관 및 유명인 활용으로 흥미 고조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험·분석 역량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란 제품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알림장 앱·채팅봇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 맞춤형으로 안전정보를 제공 앞서 개발된 검사지침서를 지속해서 보완하여 신뢰도 높임. 안전성 조사, 연구, 교육·홍보 등 어린이제품과 관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어린이제품안전센터’를 설립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22학년도 유아학비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당 국공립유치원은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 2020학년도에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원 인상하여 지원한 데 이어, 2022학년도에도 월 2만원을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3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이다.

〈 2022학년도 기관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 보육료 (유치원) (어린이집)	10만 원	28만 원	28만 원
방과후과정비 / 누리과정운영비 등 (유치원) (어린이집)	5만 원	7만 원	7만 원
계	15만 원	35만 원	35만 원

이번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올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월 15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만에 단가를 5만 원 인상하였다.

사립유치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교육부는 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유치원 가업상속공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별표**」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에 **유치원**(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구분: 유아 교육기관, 8511)을 포함한다.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유치원 **경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는 2월 3일(목)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의 전문적 건강·보건 관리와 질 높은 급식 운영이 매우 중요하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되어 왔다.

현행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인 “사인(私人)”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외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를 추가하고,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였다.
-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여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초·중등교육법」과의 통일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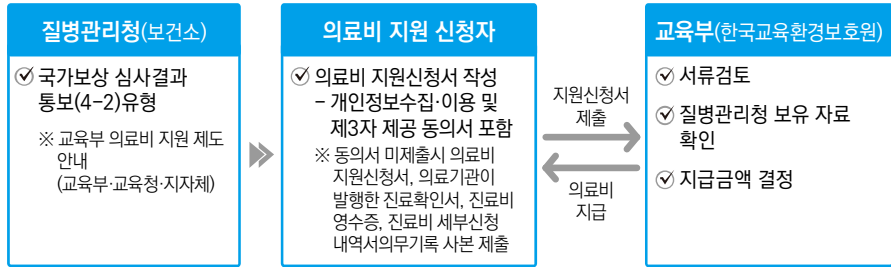
유·초·중·고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검사, 4월에도 지속 추진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3월에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도구를 활용한 선제 검사를 4월에도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개학 이후 1주간 자가진단앱 응답 결과와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연계·분석한 결과 양성예측도가 약 89%로 나타나 높은 편에 속하고, 약 16만 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4월 선제검사는 코로나19 확산 정점이 향후 1~2주간 지속되다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방역 당국의 예측과 검사 도구 소분 등에 대한 교육청·학교의 업무 가중을 고려하여 4월 2주까지는 학생 주 2회 검사를 유지(교직원 1회)하고, 4월 3주부터는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감염병 상황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소아 기초 접종 및 청소년 3차 접종이 3월 중에 실시됨에 따라, 「학생 백신 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대상에 5~11세 소아를 포함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교육부, 소아·청소년 백신 이상 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 : 의료비 지원 절차 〉



어린이 맞춤형 재난안전훈련 실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등학교 154개교와 특수학교 21개교에서 어린이 맞춤형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전국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로부터 희망을 받아 전문가와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어린 시기부터 자기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기발생 시 위험을 회피·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2개 학교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7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번 어린이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교사들의 안내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훈련에서 벗어나, 훈련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교사와 어린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이 가지는 의미가 큰 만큼, 관계기관에서도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소(UNDRR)는 리스크 랜드 보드게임(Risk land board game)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행정안전부)은 커뮤니티 맵핑(Community mapping) 수업을 지원하는 한편, 국립특수교육원(교육부)은 특수학교에 파견되는 훈련 강사를 대상으로 장애 아동에 대한 교수법과 훈련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훈련에 참여하는 학교와 교사들이 훈련 준비와 실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안내서’를 제공하였다.

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원, 경증의 경우 월 1만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원에서 9~22만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원에서 3~11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으며, 세부적인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다.

〈 2021년 대비 2022년 지원 금액(월별) 〉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중증	20 → 22만원	15 → 17만원
	경증	10 → 11만원	10 → 11만원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온라인 신청 개시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 5일(수)부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공표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구분	내용
첫만남이용권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2022년 출생 아동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 받음.
영아수당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 받음. • 0~1세 30만 원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 가능 • ①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②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 통해 온라인 신청

학대피해아동 등에게 전문적 가정형보호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2022년 1월부터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장애 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전문가정위탁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정위탁은 가정위탁의 한 유형으로, 전문가격을 갖춘 위탁부모가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문가정위탁사업'은 '21년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제도화되었으나, 그간 지방이양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었으며,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확대 실시된다.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전문위탁부모 Pool」을 활용하여 해당 시·도, 인접 시·도, 전국 순으로 적합한 '전문위탁부모'를 확인하고, 사례 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전문위탁부모에게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한다.

전문위탁부모는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가정위탁 양육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가격이 있어야 한다. 위 기준을 충족할 경우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전문위탁부모'로 선정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전문위탁부모'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를 받으며, 아동을 보호하고, 매월 전문아동보호비(100만 원)를 지원받는다.

'전문위탁부모'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문의하면 된다.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보건복지부는 1월 28일(금)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육료·양육수당·보육교직원 지원예산 등 예산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보육사업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지침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17개 시·도, 유관기관과 이해관계자 간 담화를 4차례 개최하여 각 단체의 개정 의견을 듣고 논의한 바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동수당법」 개정(2021. 12. 14.)의 후속조치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분	개정 내용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만남이용권 지급신청 절차 규정(제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 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는 신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 여부 결정 -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 •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및 사용 기한 규정(제1조의2제5항, 제6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 결정 후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에 발급받은 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
아동수당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등 이용 시 영아수당(이용권) 수급절차 규정(제10조의 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법에 따라 영아수당은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 받음.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을 이용권으로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신청이 별도로 필요 - 지급방식 변경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부령으로 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수당 수급 아동에 대한 보육비용 지원 규정(제23조제3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수당 수급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명확히 함.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운영지원을 위한 자체점검 안내서 제작·배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였다.

최근 CCTV 관련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육현장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관련 법령과 지침 적용 어려움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육 교직원, 법률가,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보다 쉽게 활용 가능한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게 되었다.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는 모니터 설치, 저장장치 보관, 영상정보 접근 제한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내용을 포함하였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 스스로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여 CCTV 설치·관리에 관한 이해도 제고를 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담당자용 지도점검 사례집'도 함께 배포하였다. 지도점검 사례집은 주요 분야별 다빈도 위반사례와 위반 시 적용 법령 등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2021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1년 「만 3세 아동(2017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5월)」에 따라 1)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2)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도입되어 매년 4분기에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일정 기준에 따라 추출한 조사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아동은 총 2만 6,251명(2017년 출생아동 36만 3,519명 중 7.2%)으로, 전년(34,819명)에 비해 24.7% 감소하였는데 이는 출생 아동 감소 및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비율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 '21년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 〉

(단위 : 명, %)

점검 대상자 총계	지자체 공무원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사례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례		
	소계	특이사항 없음	복지서비스 제공	학대의심 사례 신고	소계	특이사항 없음	수사 중
26,251 (100%)	26,238 (99.95%)	25,851 (98.48%)	383 (1.46%)	4 (0.02%)	13 (0.05%)	13 (0.05%)	0

담당 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13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13명 전원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었다.

다함께돌봄센터 아침·저녁(7~9시) 운영 연장 실시

보건복지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 제공 시간을 아침·저녁으로 확대하는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을 2022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은 맞벌이 가구의 출퇴근 시간 초등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표준 운영시간외 아침·저녁 각각 2시간씩 연장운영하는 사업이다. 연장 시간 동안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 출결 관리, 급·간식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된다.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센터는 다함께돌봄사업 누리집(www.dado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센터에 전화로 문의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전국 어린이집에 자가진단키트 지원

보건복지부는 2월 21일 국회에서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교직원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무상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가진단키트는 어린이집 등원 영유아(118만 명), 보육교직원(32만 명) 등 150만 명을 대상으로 1,550만 개(375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어린이집 영유아 및 교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의 결정에 따라 주 1~2회 등원·출근 전 가정에서 자가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영유아는 예외적으로 부모 등 가정 내 밀착 보호자가 대신 검사 가능하다.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이다.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아동의 경우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금액을 종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높여 지원을 강화한다.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양육비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기(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저소득한부모 가정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을 낮춰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 안심 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특별교육 시행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전국 직장어린이집 및 공단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슬기로운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특별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어린이집 원장이나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범위나 처벌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단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공단은 어린이집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개최되는 교육인 만큼, 관련 법령과 보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전문 변호사들을 강사진으로 위촉하여 참가자의 이해를 높이하고자 했으며,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사업장 담당자들에게 사전 질문지를 통해 발생 예상 사례나 질의 사항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보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생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